

국제문화학과 졸업논문(학술발표) 시행에 관한 내규

제 정 : 2014. 09. 12.

1차 개정 : 2019. 10. 01.

제1조(목적) 본 내규는 「학칙」 제52조 및 「졸업논문 시행 규정」에 따른 국제문화학과의 졸업논문(학술발표)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졸업논문의 대체) 졸업논문은 학술발표를 원칙으로 하되, 어학시험 성적 및 학술제 참여로 대체할 수 있다.

제3조(어학성적) ① 어학성적으로 논문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적을 취득하여야 한다.

1. ZD (Zertifikat Deutsch/ Goethe-Zertifikat A1)
 2. DELF (Diplome d'Etudes en Langue Française) A1
 3. TOEIC 혹은 TEPS 630점 이상 (990 만점)
- ②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ZD A1, DELF A1, 논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.
- ③ 어학시험 성적표는 제 8학기 15주 이전에 학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4조(졸업논문 응시 자격) ① 졸업논문(학술발표)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제 7학기 이상 등록을 마치고 재학하는 자로서 학칙에 의한 졸업기준(취득학점, 교과과정 이수조건 등)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.

② 자매대학 교환학생으로 해외대학에서 1년 수학 한 경우 4학년 2학기에 전공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며, 한 학기 수학 한 경우에는 4학년 1학기 및 4학년 2학기에 각기 전공교과목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.

제5조(졸업논문의 시행과 응시) ① 졸업논문 관련 학술발표는 4학년 1학기 및 2학기 전공교과목을 이수하고 1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.

- ② 학술발표는 매 학기말고사 20일 이전에 시행한다.
- ③ 학술발표 관련 세부사항은 “국제문화학과 학술발표에 관한 내규”를 따른다.

제6조(학술발표 평가 기준 및 결과의 사정) ① 평가기준은 발표의 내용 40점, 발표의 형식 30점, 표현력 30점으로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, 60점 이상 점수를 얻어야 학술발표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.

② 60점 미만으로 점수를 받은 학생은 별도의 일정을 정하여 재발표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졸업논문) ① 학술발표 또는 외국어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졸업논문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.

- ② 졸업논문 신청자의 경우 학과 전공 전 교과목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.
- ③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지도교수 신청에 따라 학과장이 전임교수 중에서 위촉한다.

④ 졸업논문의 작성, 심사. 결과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의 「졸업논문 시행규정」을 따른다.

제8조(졸업소요학점 미달자에 대한 조치) 외국어 시험 혹은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가 졸업기준에 미달되어 졸업을 할 수 없는 경우, 졸업논문 합격 자격은 유효하다.

제9조(학술제) ① 학술제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졸업논문을 대체한 것으로 간주한다.

1. 연극 또는 뮤지컬의 주연급으로 참여한 경우.

2. 연극 또는 뮤지컬의 조연급으로 2회 이상 참여하거나, 스태프(조명, 음향, 분장)으로 3회 이상 참여한 경우.

② 모든 참여자는 학과에서 지정한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

제10조(기타 사항)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「졸업논문 시행 규정」에 준하여 학과 교수회의를 통하여 의결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행일) 이 2차 개정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3조(시행일) 이 3차 개정 내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